

의안 번호	2459	[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5. 8. 22.(금)
- 제출 자 : 이명녀 의원 외 7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8. 22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9. 8.(월)

2. 제안이유

-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, 신청 및 지급,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, 제23조

5. 검토의견

-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는 낮은 현실임
-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돌봄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수당 지급,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- 주요내용은 구청장 및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,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,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사업 추진,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거법규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(이하 “노인성질환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가급여

가.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
나. 방문목욕 :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다. 방문간호 :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(이하 “방문간호지시서”라 한다)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- 라. 주·야간보호 :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 - 마. 단기보호 :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 - 바. 기타재가급여 :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(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3. 특별현금급여
- 가. 가족요양비 :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
 - 나. 특례요양비 :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
 - 다. 요양병원간병비 :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·업무·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(이하 이 조에서 “통합재가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,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·절차·방법·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